

大韓獸醫師會 定款

농수산부농축 제 1408호(1958. 12. 13.)
대한수의사회 정관 승인
농수산부위생 1163. 1—1537(1975. 6. 16.)
대한수의사회 정관개정 승인
농수산부위생 1161. 1—1506(1979. 7. 12.)
대한수의사회 정관개정 승인

第 1 章 總 則

第 1 條 (設立 및 名稱) 本會는 獸醫師法에 의하여 設立된 會로서 社團法人 大韓獸醫師會라 稱하고 外國에 對하여는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略稱 KVMA)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獸醫學術의 暢達과 獸醫業務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畜産의 振興과 公衆保健의 向上에 寄與함과 同時에 獸醫師의 權益伸張과 倫理確立 및 福祉向上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 (1) 家畜衛生과 公衆保健의 啓蒙指導에 關한 事項
- (2) 獸醫師道の 昂揚과 獸醫診療奉仕에 關한 事項
- (3) 獸醫學術의 暢達과 畜産振興普及과 調査研究에 關한 事項
- (4) 獸醫學教育의 發展과 獸醫師補修教育에 關한 事項
- (5) 家畜防疫, 獸醫診療 등 獸醫業務發展을 위한 調査研究 및 獸醫業 經營의 改善向上에 關한 事項
- (6) 獸醫職能領域 開發과 動物保護에 關한 事項
- (7) 獸醫藥品, 器材 및 獸醫學書籍 斡旋에 關한 事項
- (8) 獸醫學知識 등의 國際交流에 關한 事項
- (9) 機關紙, 學術誌 및 獸醫學書籍 發刊에 關한 事項
- (10) 對外的調整協力과 會員親睦에 關한 事項
- (11)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 4 條 (構成)

- (1) 本會는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各道 및 軍에 支部(以下 “支部”라 한다)를 두고 各支部에는 區(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에 限한다), 市·郡에 分會를 둘 수 있으며 各支部는 該當 市道獸醫師會라 稱할 수 있다.
- (2) 中央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支部 및 分會의 事務所는 各 市·道廳, 所在地와 區·市·郡廳所在地에 둘을 原則으로 한다.

第 2 章 會 員

第 5 條 (資格 및 入會)

- (1) 本會 會員은 大韓民國獸醫師免許를 取得한 者로 한다.
- (2) 本會 會員은 支部 會員이 되어야 한다.
- (3) 1項 該當者는 遲滯 없이 支部를 通하여 入會手續을 하고 本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 6 條 (義務 및 權利)

- (1) 會員은 獸醫師倫理綱領과 本會의 定款 및 決議를 遵守하여야 한다.
- (2) 會員은 入會金, 年會費 또는 特別會費, 其他 負擔金을 各所屬支部에 納付하여야 한다.
- (3) 會員은 定款에 制定된 目的과 事業이 同一한 別個의 團體를 任意로 組織할 수 없다.

(4) 第2項의 義務를 다 한 會員은 選舉權, 被選舉權 및 其他 本會에 대한 모든 權利를 갖는다.

(5) 會員은 그 權益上 諸般問題에 關하여 本會에 協助要請을 할 수 있다.

第7條 (贊助會員) 第5條에 規定된 以外的 사람이나 團體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할 때는 贊助會員으로 定할 수 있으며 贊助會員은 別途 定하는 贊助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會員의 義務와 權利는 없다.

第8條 (名譽會員)

(1) 本會의 發展 또는 獸醫學術 및 獸醫業務에 貢獻이 顯著하고 人格, 學識이 著名한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거쳐 名譽會員으로 하며 會員의 義務와 權利는 없다.

(2) 名譽會員의 推薦節次와 基準은 따로 定한다.

第9條 (會費) 會員의 會費 및 會費徵收方法은 代議員總會(以下 “總會”라 稱한다)에서 定한다.

第3章 任 員

第10條 (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 會 長 2名 (3) 理 事 10名 以內 (4) 監 事 2名

第11條 (任員選舉)

(1) 會長, 副會長, 監事は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各支部長은 理事가 되며 其他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2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理하며 支部를 指導監督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이를 代理한다.

(3) 會長, 副會長이 同時에 有故時는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中에서 會長職을 代行한다.

(4) 理事는 本會 定款에 定한 바에 의하여 會務를 審議한다.

(5) 監事は 會務를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13條 (任員의 任期 및 補選)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任員에 缺員이 생길 時는 會長, 副會長, 監事は 總會에서 補選하고 餘他任員은 理事會에서 補選하며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4條 (顧問, 名譽會長)

(1) 顧問은 會長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會長이 委囑하되 任員의 任期와 같다.

(2) 名譽會長은 本會 會長을 歷任한 者中에서 理事會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推戴한다.

第4章 代議員總會

第15條 (代議員總會)

(1) 代議員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하고, 定期 代議員總會와 臨時 代議員總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는 年 1回, 每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以內에 臨時總會는 在籍代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理事會의 要求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하고 會長이 議長이 된다.

臨時總會의 召集要求가 있을 時에는 會長은 遲滯 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3) 總會의 召集은 定期總會는 20日前 臨時總會는 10日前에 會議의 目的, 討議事項, 日時, 場所를 代議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緊急을 要할 時에는 日字의 制限을 받지 아니 한다.

第16條 (代議員 選出 및 任期)

(1) 代議員은 支部에서 選出하며 代議員 有故時는 그 職務를 代行하기 위하여 支部長이 交替代議員을 選任하여야 한다.

(2)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任期의 基準은 定期總會日로부터 3年後의 定期總會日 前날까지로 하며 補選된 代議員의 任期는 그 殘餘期間으로 한다.

(3) 各支部의 代議員數는 支部會員數에 比例하여 이를 策定하며 每年 12月末 本會에 報告된 會員數를 基準

으로 한다.

基本代議員數를 2名으로 하고 會員 100名 超過時마다 1名씩 增員한다.

(4) 支部長은 當然職代議員이 된다.

第17條 (代議員任務 및 報告)

(1) 代議員이 總會에 參席할 때에는 그 所屬支部長의 信任狀을 提出하고 [登錄하여야 하며 總會 結果를 所屬支部에 報告하여야 한다.

(2) 代議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가지며 本會 會務에 關하여 書類閱覽을 要求할 수 있다.

第18條 (總會議決)

(1) 總會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但, 定款의 改正, 基本財産의 處分은 在籍代議員 3分之 2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2) 議長은 議事に 關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指名된 3名의 代議員이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19條 (權限委任) 不得已한 事情으로 總會에 參席할 수 없는 代議員은 當該 支部長의 承認을 받아 所屬 支部會員에게 自己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但, 代議員은 他代議員의 權限을 行事할 수 없다.

第20條 (總會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1) 豫算 및 決算과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 (2) 定款改正에 關한 事項
- (3) 任員選舉에 關한 事項
- (4) 負擔金에 關한 事項
- (5) 基本財産의 造成 및 管理處分에 關한 事項
- (6) 理事會에서 附議된 事項
- (7)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總會議案)

(1) 各支部는 定期總會에 提出할 議案을 理事會 7日前까지 本會에 提出할 수 있다.

(2) 議案은 理事會에서 整理하여 總會에 提出한다.

(3) 定期總會에서의 緊急討議事項의 提案은 在席代議員 3分之 1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5章 理事會

第22條 (理事會의 構成 및 議決)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2)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在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23條 (理事會의 召集)

(1) 理事會는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한다.

(2) 定期理事會는 年 2회로 하며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3分之 1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4條 (理事會의 任務) 理事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本會 目的과 事業遂行에 關한 事項
- (2) 總會에 附議될 事項 및 委任된 事項
- (3) 財産, 會計, 給與 및 處分에 關한 事項
- (4) 運營細則 및 規定制定에 關한 事項
- (5) 諸會費 및 負擔金에 關한 事項
- (6) 各種 委員會 委員選出 및 運營에 關한 事項
- (7) 任員 補選에 關한 事項

- (8) 訴請과 表彰 및 懲戒에 關한 事項
- (9) 諸發刊物에 關한 事項
- (10) 其他 會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25條 (實行理事會) 理事會에 會務의 早速한 執行을 위하여 實行理事會를 둔다. 實行理事會 理事는 理事中에서 會長推薦에 의거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第26條 (實行理事會의 構成 및 議決)

- (1) 實行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若干名의 業務擔當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 (2) 實行理事會는 本會의 運營 및 發展을 위한 諸設施策과 事業을 研究計劃하며 會長은 그 業務를 企劃, 學術, 財務, 法制, 獸醫務 등 業務分擔理事에게 分擔處理케 한다.
- (3) 實行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在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 (4) 業務擔當理事의 業務分擔에 關한 事項은 따로 定한다.

第27條 (實行理事會의 任務) 實行理事會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總會 및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
- (2) 資產管理 및 運營에 關한 事項
- (3) 事務 및 會計에 關한 事項
- (4) 各委員會運營에 關한 事項
- (5) 緊急을 要하는 事項
- (6) 其他 會務運營에 關한 事項

第6章 委員會 및 學會

第28條 (委員會)

- (1) 本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다음 委員會를 두며 委員의 任期는 任員의 任期와 같다.
學術 및 弘報委員會, 財務委員會, 法制委員會, 獸醫務委員會
理事는 當該委員會 委員長이 됨을 原則으로 한다.
- (2) 本會는 必要에 따라 前項에 規定된 委員會 外에 特別委員會를 들 수 있다.
特別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은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29條 (學會)

- (1) 本會에 獸醫學術의 振興을 위하여 學會를 들 수 있다.
- (2) 學會運營에 關하여는 別途規定으로 한다.

第7章 支 部

第30條 (支部) 支部는 다음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 (1) 支部는 本會 定款에 準하는 會則을 制定하여야 하며, 會則을 制定, 改正하였을 때나 任員 및 代議員 選任이 있었을 때는 30日以內에 本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 (2) 豫算書, 決算書 및 事業計劃書, 總會會議錄을 總會後 20日以內에 本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3) 支部는 會員으로부터 徵收한 本會의 入會金, 年會費 및 其他 負擔金에 關한 明細資料를 作成하여 遲滯 없이 本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 (4) 本會가 行하는 會務 및 財政監査를 받아야 한다.
- (5) 支部는 會員의 定期申告, 移動實態, 訴請, 表彰 및 懲戒事項을 遲滯 없이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6) 支部의 對外的建議 및 諮問에 關한 事項을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7) 其他 必要에 依하여 本會가 指示한 事項에 對하여 本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8 章 財 政

第31條 (財政)

- (1) 本會의 財産은 總會에서 決議된 不動産, 動産, 諸會費 및 負擔金과 政府補助金과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 (2) 各支部 所有財産은 該當支部가 이를 管理하며 處分에 關하여는 別途로 定한다.

第32條 (基金 및 處分) 本會는 總會의 議決에 따라 諸基金을 積立할 수 있으며 總會의 議決 없이 處分할 수 없다.

第33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일부터 12月末日까지로 한다.

第34條 (運營制限) 本會의 財政은 政府가 認定하는 金融機關에 預置 하여야 하며 投機 또는 投資에 使用하지 못한다.

第 9 章 事 務 處

第35條 (事務處)

- (1) 本會의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本會에 事務處를 두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을 둔다. 實行理事가 兼職할 수도 있다.
- (2) 事務處長은 會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會長이 任命한다.
- (3) 事務處에 關한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 定한다.
- (4) 職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10章 表彰 및 懲戒

第36條 (表彰)

- (1) 顯著한 功績이 있는 支部, 分會, 會員 및 職員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會長이 表彰한다.
- (2) 會를 위한 功績이 顯著한 非會員에게도 理事會 決議로 會長이 表彰 또는 感謝狀을 授與할 수 있다.

第37條 (懲戒) 會員의 自律의 團束과 秩序確立을 위하여 法制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理事會의 決議로서 會長이 이를 懲戒한다. 懲戒에 關한 事項은 別途 定한다.

第11章 補 則

第38條 (規定制定) 本會의 職制, 處務 및 各委員會 運營 등 會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諸規定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39條 (施行細則) 本定款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第40條 (準用) 本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附 則

- (1) 本會 解散時의 本會 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 (2) 本定款은 許可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 (3) 本定款 施行當時의 會務에 關한 權利와 本會 任員, 名譽會員, 顧問 및 各委員會 委員은 本定款에 의하여 取得 또는 選出된 것으로 看做하며 任員, 顧問, 各委員會의 任期는 그 殘餘任期 滿了日까지로 한다.